파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시 보

제2559호

2026년 11월 5일 (목)

차 례

조례 · 규칙

○ 파주시 조례 제2437호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1

○ 파주시 조례 제2438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회람									

발 행 : 파 주 시

제2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

2026년　11월　5일

파주시 조례　제2437호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의 구현과 시정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 현안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
2. 파주시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시정의 혁신 및 행정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단체 관계자

2. 지역 내 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신망이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3. 학계,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단체 또는 파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정에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파주시민으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

5.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모집인원,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담회 등의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보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심의 안건, 주요 발언 내용 및 의결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

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문 및 정책 제안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 정족수 등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안건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가 시행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정 현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지원)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소통홍보관 ☏820-7784
입안자	소통홍보관	최 을 영
	핵심현안TF팀장	김 태 환
	담당자	민 채 린

□ 제정이유

○ 파주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의 구현과 시정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촉·해촉,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의견 청취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 참석수당, 위원회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제2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

2026년　11월　5일

파주시 조례　제2438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10만원”을 “15만원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연1회”를 각각 “연 1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 ☎ 940-4397
입안자	복지정책과장	최 선 희
	복지기획팀장	임 현 진
	담 당 자	노 규 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이하 ”배우자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① ---------- ---------- ---------- ---------- ---------- ---------- ---------- ---------- ---------- ---------- ----------.
1. 수당: 월 10만원	1. ------ 15만원 이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배우자 위로금: 연1회 20만원	3. ---------- 연 1회 ----
② 시장은 80세 이상의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1회 참전특별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 -------- 연 1회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및 띄어쓰기 반영(제8조)

-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 이내로 인상